

통번역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

제정일 : 2001. 3. 1.

개정일 : 2019. 10. 11.

제1조(목적) 본 대학원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생활동이 건실한 학생의 학업의욕과 연구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, 본 내규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, 선발방법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위원회 구성 및 의결)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, 대학원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장학금 지급 규모 결정 및 대상자 선정
2. 장학금 지급 대상자별 지급기준
3.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(장학금 종류 및 선발방법) 장학금의 종류 및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성적장학금 :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, 학과별 등록인원 비율에 따라 장학선발 인원을 배분하고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과 학과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.
- ② HUFSAN장학금 : 본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학생 중에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, 선발된 학생은 학과조교로 근무하여야 한다.
- ③ 외국인유학생장학금 : 외국인 입학생중 학과 추천을 받은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,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, 지급한다.
- ④ 근로장학금
 1. 원우회임원장학금 : 원우회 임원활동을 하는 자에게 매 학기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매년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선발한다.
 2. 근로조교장학금 : 학과조교 근무를 하거나 연구소, 자료실에 근무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, 학과별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.
 3. 원내조교장학금 : 대학원장과 부원장이 지정하는 대학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에게 지급하며,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과 부원장이 정한다.
- ⑤ 교직원직계가족 장학금 : 교직원의 직계가족이 대학원에 입학 및 재학 중일 때 지급한다.
- ⑥ 특별장학금 :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⑦ 면학장학금 :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며, 선발방법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에 따른다.
- ⑧ 통번역대학원 교수장학금 :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, 선발방법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에 따른다.
- ⑨ 미래장학금 : 본교 LD 학부 및 LT 학부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, 선발방법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에 따른다.
- ⑩ 복지장학금 :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 학생에게 지급하며, 선발방법은 매

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에 따른다.

- ① 외부장학금 : 외부장학금은 외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, 지급한다.
- ② 장학금 선발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정규학기 학점취득자 우선, 학기 우선, 전체 평점 우선, 직전학기 이수학점 우선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4조(장학금 지급 기준)** ① 제3조 1~3항의 장학금은 2학기 지급 시부터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3.5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입학 첫 학기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)
- ② 제3조 4~8, 10항의 장학금은 2학기 지급 시부터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3.0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입학 첫 학기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)
- ③ 제3조 9항의 장학금은 2학기 지급 시부터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4.0이상 유지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(단, 입학 첫 학기의 경우 학부 평점평균 3.7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)
- ④ 휴학 중인 자, 학칙 위반으로 징계 중인 자, 재입학자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⑤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한 학생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내규의 제·개정) 본 내규의 제·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6조(기타) 본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거나, 본 대학교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(1) 본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본 내규는 2018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(3) 본 내규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